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 2023-109호

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4-1번지 일대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(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)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7월 20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사업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사업명칭 :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법 인 명 :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4가길 5, 2층(동선동5가)
- 대표자
 - 성 명 : 손 장 근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경궁로○길 ○, ○층

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4-1번지 일대
- 면 적 : 15,608.20m²

4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예정일 : 2023년 7월
- 준공예정일 : 2027년 2월

5. 사업대행 개시결정일 : 2023년 7월 20일

6. 사업대행자

- 사업대행자 :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
- 대 표 자 : 민 관 식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)

7. 대행사항

- 1) 관리처분계획인가(변경인가 포함) 및 분양승인 등 대관청 인·허가 업무의 지원
- 2) 대관청 행정업무 지원
- 3) 신탁사무
- 4) 일반분양분 분양업무 대행
- 5) 분양대금, 조합원 분담금, 청산금, 부과금 등 자금수납
- 6) 도시정비법 제89조에 의한 청산금 징수·교부, 추가 분담금 징수, 도시정비법 제93조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·징수 업무의 지원 또는 미이행 시 동 업무의 이행
- 7) 토지신탁계약서(정비사업) 특약사항 제5조 제1항의 한도내에서 대지급 및 자금차입
- 8) 공사대금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관리
- 9) 현금청산, 매도청구 등 본 사업 관련 토지 확보 업무 지원
- 10) 재산의 처분,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관할 시장·군수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- 11) 기타 사업대행개시결정에서 정해진 대행사항. 끝.

공 고

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23 - 953호

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청회 개최 공고

『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』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당사자 및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·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.

2023. 07. 20.

성 북 구 청 장**1. 공청회 개최 목적**

-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용지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을 위한 장위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 청취

2.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

- 공청회 개최안건 :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청회 개최
- 공청회 개최일시 : 2023년 8월 8일(화) 15:00
- 공청회 개최장소 : 아리랑힐호텔 3층(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8)

3. 입안하고자 하는 재정비촉진계획(안)의 개요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-37번지 일대
- 면 적 : 기정) 94,037.0㎡ → 변경) 91,362.0㎡
- 사업방식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주요내용 : 장위10구역 내 종교용지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

4.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

- 공청회에 의견서 접수 혹은 발표하실 분은 2023년 08월 04일까지 서면(우편, 팩스, 이메일)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대표자를 선정(2인 이내)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
- 공청회 발표자 참가 신청
 - 주 소 : (우)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9층)
 - 신청방법 : (우편)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9층, (팩스) 02)2241-6545, 이메일 sijkhs@sb.go.kr
 - 신청서식 : 성북구 홈페이지 『고시·공고』란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 02-2241-28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 청 회 발 표 자 선 정 신 청 서

신 청 자	성 명	(생년월일 :)
	주 소	
	연 락 처	(핸 드 폰 :)
	신청자격	당사자, 이해관계인, 관련분야(전문가, 종사자), 단체대표(소속단체 :), 기타
	주요경력 및 이 력	
	권리물건	
발 표 요 지		
신 청 자 주 의	① 공청회 발표자는 행정청(성북구청)에서 신청자 중 2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자는 개별통보합니다. ② 발표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 38조의3 규정에 의거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. ③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. ④ 발표자는 공청회 주재자의 진행에 따라야 하며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,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, 퇴장명령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⑤ 발표자별 발표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. ⑥ 기타 공청회와 관련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 02-2241-2834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	

2023. .

성 북 구 청 장 귀하

인 사

《발령 제177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윤 정 두	성 북 구 전 입 을 명 함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장에 보함	서울특별시	지방시설사무관 (건 축)
2	고 병 언	성 북 구 전 입 을 명 함 도시관리국 건축과장 직무대리를 명함	서울특별시	지방시설주사 (건축,승진예정)
3	백 승 우	주거정비과장 직무대리를 해제함	주거정비과	지방시설주사 (건 축)
4	정 용 근	건축과장 직무대리를 해제함	건 축 과	지방시설주사 (건 축)

(시행일자 : 2023. 7. 13.字)

《발령 제178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송 창 욱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23.07.17.~2024.07.16.)	보건위생과	지방보건주사보
2	최 윤 정	복 직 을 명 함 보건소 근무를 명함	행정문화국	지방보건주사보
3	이 서 희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질병)을 명함(연장) (2023.07.17.~2024.01.16.)	의 약 과	지방의료기술주사보 (방 사 선)

(시행일자 : 2023. 7. 17.字)

《발령 제179호》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소속	직급
1	김소영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(연장)(2023.07.18.~2023.07.19.)	행정문화국	지방시설주사보 (건축)

(시행일자 : 2023. 7. 18.字)

《발령 제180호》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소속	직급
1	나종원	성북구 전입을 명함 보문동 근무를 명함	강서구	지방행정주사보
2	민은주	강서구 전출을 명함	보문동	지방행정주사보

(시행일자 : 2023. 7. 13.字)

